

질의회신서

1. 질의 내용

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에서 계획·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학교장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·홍보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위 교육과정에 개별적으로 신청한 다음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이 최종 확정된 교육대상자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교육과정을 관리하는 경우,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상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2. 회신사항

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‘교육활동이란,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·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·특별활동·재량활동·과외활동·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’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

- ① 귀 회관에서 계획·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단위 학교장에게 안내하고,
- ② 단위 학교장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통지하여,
- ③ 학생 또는 학부모가 귀 회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한 경우,
- ④ 귀 회관에서 최종 확정된 교육대상 학생을 해당 소속 학교에 통보하였다면,

이는 학교장이 귀 회관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경우로써,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해 귀 회관을 통한 간접적 관리·감독하에 행하여지는 활동으로 볼 수 있어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.
끝.